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의 경우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00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의 경우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 에 대한 특례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6월 7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
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
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
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
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

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의 경우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¹⁾ 등에 대한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①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②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며, ③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일반지주회사 체제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각 목 생략)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u>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u> <u>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u> <u>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u> <u>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공동출자법인은 그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u>
<u>제2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생략)</u>	<u>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현행 제22조의2와 같음)</u>
<u>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생략)</u>	<u>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현행 제22조의3과 같음)</u>
<u>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u>	<u>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u> <u>-----</u> <u>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u> <u>-----.</u>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2조제8호</u>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략) ③ ~ ⑥ (생략)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22조의</u>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u>-----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22조의</u> 5----- ----- ----- ----- ----- -----.
---	--

⑤ ~ ⑪ (생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 ----- ----- -----.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22조의5----- ----- -----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2. 제22조의5-----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장애인 중심의 직업 환경을 조성한 곳으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 규모에 따라 중증 장애인 일정 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의미함.²⁾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한편,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면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해당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³⁾

그런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어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한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 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3)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목 생략)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목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목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 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 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이에 개정안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출자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주식소유 비율 제한,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 체제의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 (개정안)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 허용요건**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것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특히, 지주회사로의 전환 전에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주회사 전환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동출자 관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영세화 또는 장애인 고용안정 저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많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중 소규모 기업은 관리인력, 시설 등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단독으로 설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는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예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

참고 1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

- (정의)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요건

- ①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③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시 15%, 100~300명 미만시 10%+5명, 300명 이상시 5%+20명 고용
④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⑤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⑥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표준사업장 설립 현황

(‘24.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인증 표준사업장	상시근로자	장애인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계	703	27,863	16,198	13,000	58.1
일반	548	16,685	8,897	7,106	53.3
자회사형	154	11,134	7,256	5,850	65.2
컨소시엄형	1	45	45	44	100

□ 표준사업장 지원

- (무상지원금) 작업·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장애인고용 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 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원 지원
 - －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고용 및 7년간 고용유지 의무, 고용의무 미준수 시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 환수
- (판로확대 등 운영지원)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가능
 - －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감면
 - － 표준사업장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다음 2년간 50% 감면